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
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』
일부 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
(청소행정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1월 일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'22.6.14, 공포·시행)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정비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

제8조의4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)

2. 「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[주로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. 다만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,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－ 예고기간 : 2022. 9. 29. ~ 10. 19. (20일)

－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

－ 인권영향평가 결과 : 검토 의견 있음(별첨)

－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－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제외대상

－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5)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: 불수용

－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 함

인권영향평가 의견
－ 2조 3항(정의) “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”을 “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영 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상업장은”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 바람.
－ 이유 : 3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큼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
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음식물류의 조리·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다류,
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
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” 을 “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
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” (이하 “다량배출사업장”이라 한다)이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다만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<u>음식물류의 조리·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다류,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.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-----.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
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청 소 행 정 과 장 박 홍 진